

-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2년 4월 23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2년 4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02년 4월 27일

제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선산출장소장 최 화 영

나. 제안이유

- 구미시 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농업구조개선을 유도하고 농업 경쟁력의 강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융자금 이자 보조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
- 융자금이자 보조금 시부담 비율을 5% 이내에서 10퍼센트 이내로 개정

라.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완 진

- 본 개정 조례안은 농가소득 증대화 사업의 시설투자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이자 보조금의 구미시 부담비율을 현행 5% 이내에서 10퍼센트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임.

-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과 WTO체제의 개방화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가소득증대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융자대상 사업 선정시 적정성을 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